변경 대비표

☐ **대상펀드명 :** 트러스톤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☐ **변경 사항:** ①I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④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☐ **효력발생일**: 2020. 6. 19.

☐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보수 기준일 기재	- -	**2020.6.10 기준** **2020.4.30 기준**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0.6.10 기준**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0.5.31 기준**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**동 펀드의 해당 클래스 만 기재**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**2020.06.19. :I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**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0.5.31 기준**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0.5.31 기준**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I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	I 클래스 :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I 클래스 : **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**

			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**동 펀드의 해당 클래스 만 기재**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2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2) 지분증권(주식 등)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**전자등록기관**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1.38%	**표준편차 : 1.99%**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I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	⑤I 클래스 :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⑤I 클래스 : **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**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0.6.10 기준**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	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, **가목 및**

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**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** **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** **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**
	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	공제제도 **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**

		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※ 지방소득세 별도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0.6.10 기준**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0.6.10 기준**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0.6.10 기준**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1. 30 기준	**2020. 5. 31 기준**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**전자등록기관**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- 집합투자업자 ·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**전자등록기관**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- 집합투자업자 ·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

	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〈신 설〉	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**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** **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** **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** **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**

			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**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** **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** **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** **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**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	**전자등록기관** **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**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 **전자등록기관**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**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**	**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**	**세액공제율**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